

## 【 4 】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10. 20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 개정이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위임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구직결민원과 농정업무 등은 현행대로 수행하고 규제단속 업무와 각종 조사업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위임하였기에 삭제함(안 별표)
- 나. 이·미용업소에 관한 사무,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무, 입산신고에 관한 사무, 소하천에 관한 사무, 군도의 불법행위 단속사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함(안 별표)
- 다. 읍·면접수분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사무는 읍면에 위임함(안 별표)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세무과	1	○ 납세증명서 발급 (읍면 접수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읍·면장
사회복지과	1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매장·화장·개장신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읍·면장
	2	· 공설묘지 매·화장 증명	동법시행규칙 제4조	
	3	·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양주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4	·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양주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5	○ 의료보장증 재사용확인	시행령 제11조 및 양주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6	○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6조 제2항	
	7	○ 의료보호 중지시 의료보장증 회수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청소과	1	○ 폐기물투기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7조	읍·면장
농림축산과	1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별표1"	읍·면장
도로과	1	○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양주군복지회관운영조례 제3조, 제12조, 제13조	읍·면장
	2	○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동조례제6조, 제13조	
	3	○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 및 계약취소	동조례제7조, 제13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실과	위 임 사 무 명	소관실과	위 임 사 무 명
민원봉사과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	(삭제)	(삭제)  1. 납세증명서 발급 (읍면접수분에 한함)
사회복지과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 위생접객업종 이·미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영업소 개설사실 통보 6. 영업소 변경사항 통보 7. (생략) 8. (생략) 9. (생략)	세무과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환경보호과	○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화장실 관리 2. (생략) 3.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에 관한 권한(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4. 제3호와 관련한 단독정화조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첨소과	(삭제) (삭제)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농림축산과	1. (생략) ○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입산신고 3.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위한 신고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지역경제과	○ 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사용허가 2. 사용료 조정 및 징수 3. 주소의 이동신고 4. 시장사용 폐지신고 5. 사용취소 및 정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소관실과	위 임 사 무 명	소관실과	위 임 사 무 명
건설행정과	<p>○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있어서 서의 다음의 권한</p> <p>1. 소하천 관리</p> <p>2. 유수의 점용허가</p> <p>3. 토지의 점용허가</p> <p>4.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개축, 변경 허가</p> <p>5.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허가</p> <p>6.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내용 공고</p> <p>○ 제2호 내지 제5호의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p> <p>7.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p> <p>8. 점용료 등의 감면</p> <p>9. 허가의 효력회복</p> <p>○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다음의 처분</p> <p>10. 허가의 취소</p> <p>11.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물건의 이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p> <p>12. 소하천 점용등 허가의 제한</p> <p>13.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제한</p>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로교통과	<p>○ 도로(군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p> <p>1. 토지형질변경을 변경하는 행위</p> <p>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p> <p>○ 도로(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p> <p>1.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p> <p>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 을 적치하는 행위</p> <p>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p>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시과	<p>1. 토지출입허가</p> <p>○ 개발제한구역내 해당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등일 용도,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증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p>	도로과	(삭제) (삭제) (삭제)

소관실과	위 임사무명	소관실과	위 임사무명
	<p>3.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항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p> <p>4.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p> <p>5.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1차 계고처분(대집행을 위한 계고 처분 제외)</p> <p>6. (생략)</p> <p>7. (생략)</p> <p>8. (생략)</p>		<p>(삭제)</p> <p>(삭제)</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주택과	<p>1.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p> <p>2.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수리</p> <p>3.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p> <p>4.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p> <p>5. 비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의 작성</p> <p>6.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지시등 처분(허가취소, 이행강제금등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위한 행정처분 제외)</p>	(삭제)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제3편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양주군사무위임조례

[1972. 6. 1]  
조례 제328호]

개정 1982. 4.17 조례 제 799호  
개정 1984. 1.31 조례 제 917호  
개정 1984. 2. 1 조례 제 979호  
개정 1985. 1.30 조례 제1019호  
개정 1985. 3.12 조례 제1023호  
개정 1985. 9.30 조례 제1052호  
개정 1985.11.25 조례 제1079호  
개정 1985.12.31 조례 제1084호  
개정 1986. 1.10 조례 제1104호  
개정 1986. 1.10 조례 제1105호  
개정 1986. 6.12 조례 제1115호  
개정 1986.10. 6 조례 제1120호  
개정 1988. 4.30 조례 제1195호  
개정 1989. 3.23 조례 제1253호  
개정 1989. 4.29 조례 제1265호  
개정 1989. 7.12 조례 제1282호  
개정 1991. 1.12 조례 제1341호  
개정 1991. 1.18 조례 제1360호  
개정 1994. 6.22 조례 제1492호  
개정 1994. 8.25 조례 제1507호  
개정 1997. 7. 7 조례 제1622호  
개정 1997. 9.29 조례 제1643호  
개정 1998. 4.20 조례 제1670호  
개정 2000. 2. 7 조례 제1733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임사항) 군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면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제 3 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 4 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1972. 6. 1 조례 제3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4.17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31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30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12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3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15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2.31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편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부 칙 (1986. 1.10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10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12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 6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30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23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9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12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2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8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22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부 칙 (1994. 8.25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7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29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20 조례 제167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중 주택과소관 위임사무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읍·면위임은 회  
천읍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부 칙 (2000. 2. 7 조례 제17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조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제3편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별표)

## 위 임 사 무 명 (제2조 관련)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민 원 봉 사 과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21조의3	읍·면장
사 회 복 지 과	1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매장, 화장, 개장신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 률 제5조	읍·면장
	2	· 공설묘지 매·화장 증명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	·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양주군공설묘지설치 및운영조례 제4조	
	4	·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 료 징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 률시행령 제11조 및 양주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5	○ 위생접객업종 이·미용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영업소 개설사실 통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6	· 영업소 변경사항 통보	"	
	7	○ 의료보장증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법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	
	8	○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 급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9	○ 의료보호 중지시 의료보장 증 회수	동법시행규칙 제9조	
	1	○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중화장실 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읍·면장
	2	· 폐기물투기금지구역내 투 기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7조	

## 제3편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3	○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에 관한 권한(단,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 택(아파트)은 제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4	○ 제3호와 관련한 단독 정화 조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동법 제14조	
농 림 축 산 과	1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별표1]	
	2	○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입산신고	산림법 제98조	
	3	·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 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	동법 제100조의2 제3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4, 5, 6항	
지 역 경 제 과		○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면장
	1	· 시장사용허가	양주군 시장사용조례 제1조	
	2	· 사용료 조정 및 징수	동조례 제3조제1호	
	3	· 주소의 이동신고	동조례 제11조	
	4	· 시장사용 폐지신고	동조례 제12조	
	5	· 사용취소 및 정지	동조례 제13조	
건 설 행 정 과		○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읍·면장
	1	· 소하천 관리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항	
	2	· 유수의 점용허가	동법 제14조제1항 제1호	
	3	· 토지의 점용허가	동법 제14조제1항 제2호	
	4	·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개 축, 변경허가	동법 제14조제1항 제3호	

## 제3편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5	•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허가	동법 제14조제1항 제4호	
	6	•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내용공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7	○ 제2호 내지 제5호의 허가 에 따른 다음의 권한		
	8	•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동법 제22조제1항	
	9	• 점용료 등의 감면	동법 제22조제4항	
	10	• 허가의 효력회복	동법 제20조	
	11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다 음의 처분		
	12	• 허가의 취소	동법 제17조	
	13	•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물 건의 이전 제거 기타 필 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17조	
	14	• 소하천의 점용등 허가의 제한	동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제15조	
	15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 치제한	동법 제15조	
도로 교통과	1	○ 도로(군도)의 접도구역 내 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읍·면장
	2	•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 제50조제4항	
	3	•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동법 제50조제4항	
	4	○ 도로(군도)에 관한 금지행 위 단속		
	5	•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동법 제47조	
	6	•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동법 제47조	
	7	•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 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	

## 제3편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도 시 과	1	○ 토지출입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읍·면장
	2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 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 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증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가목	
	3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 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 항 제4호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 수선	동규정 제4조제4호 나목	
	4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 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	동규정 제4조 제4호 다목	
	5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1차 계고처분(대집 행을 위한 계고처분 제외)	동규정 제48조의2	
	6	○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허 가취소	양주군복지회관운영조 례 제3조, 제12조, 제13조	
	7	○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동조례 제6조, 제13조	
	8	○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 및 계약취소	동조례 제7조, 제13조	
주 택 과	1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 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회천읍장

## 제3면 총무 제3장 행정 양주군사무위임조례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2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회천읍장
	3	○ 건축물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	회천읍장
	4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건축법 제16조 및 제18조	회천읍장
	5	○ 비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건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읍·면장
	6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지시등 처분(허가취소, 이행강제금등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위한 행정처분 제외)	건축법 제69조제1항, 제2항	읍·면장

##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위임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구직결민원과 농정업무 등은 현행대로 수행하고 규제단속 업무와 각종 조사업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위임하였기에 삭제함(안 별표)
- 나. 이·미용업소에 관한 사무,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무, 입산신고에 관한 사무, 소하천에 관한 사무, 군도의 불법행위 단속사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함(안 별표)
- 다. 읍·면접수분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사무는 읍면에 위임함(안 별표)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전문)